교습비등 반환 (학원법 시행령 제18조)

- 학원설립 운영자,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,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교습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

< 교습비등 반환기준 > <시행령 개정 2020. 3. 31.>

구 분	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①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되거나 학원 등록말소, 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(제18조 제2항 제1호, 1의2) ② 학원 설립운영자, 교습자,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 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(제18조 제2항 제2호)		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또는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나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구 분	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(제18조제2항 제3호)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독서실 외	교습 시작 전 총교습시간의 1/3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 당하는 금액
			총교습시간의 1/2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 당하는 금액
			총교습시간의 1/2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	독서실	학습장소 사용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학습장소 사용 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 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 지의 일수)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 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 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[비고]

-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